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16
----------	------

제출년월일 : 2011. 09.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됨으로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작성대상 (안 제3조)
- 다. 작성방법 등 (안 제4조)
- 라. 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안 제5조)
- 마.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생략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되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정(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하여 만든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2.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 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 할 때
 4.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할 때
 5.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붙여 넣을 수 있다.

제4조(작성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된 때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의안의 시행에 따른 모든 필요비용에서 기 준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추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계산해서 정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상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 반되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 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맡길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

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안건에 함께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올리는 안건에 붙여 넣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제4조 관련)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별지 제2호서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oooo년)	2차년도 (oooo년)	3차년도 (oooo년)	4차년도 (oooo년)	5차년도 (oooo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만자 등)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안 제○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제3조제○항).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국 △△ 과장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